

김선화 / 5월 / 실전GS / 1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63465	12.5	10.5	15.5	11	49.5	1	2.78%	36
563376	15.5	11	14	8.5	49	2	5.56%	
562272	12	10.5	14.5	9.5	46.5	3	8.33%	
563340	12	11.5	13	10	46.5	3	8.33%	
562197	11	12	14	9	46	5	13.89%	
562274	11.5	11.5	14	9	46	5	13.89%	
562402	10.5	13	12.5	10	46	5	13.89%	
563417	10	11.5	14	10.5	46	5	13.89%	
549661	11.5	9	15	10	45.5	9	25.00%	
563452	11	11	12.5	10	44.5	10	27.78%	
548660	14	11.5	12.5	6	44	11	30.56%	
549662	16.5	10.5	13.5	3.5	44	11	30.56%	
563355	12.5	10	11	10.5	44	11	30.56%	
563024	12.5	8.5	14	8.5	43.5	14	38.89%	
563531	10.5	10.5	15.5	7	43.5	14	38.89%	
562200	10.5	12.5	11	8.5	42.5	16	44.44%	
563404	11.5	11	15	5	42.5	16	44.44%	
563526	8	9.5	13.5	9.5	40.5	18	50.00%	
563313	11	10.5	13	5.5	40	19	52.78%	
562985	8.5	12	13.5	5.5	39.5	20	55.56%	
563411	9.5	11.5	11.5	7	39.5	20	55.56%	
562980	8.5	8.5	14	8	39	22	61.11%	
548701	12	9.5	12	5	38.5	23	63.89%	
563201	10	9	10.5	7	36.5	24	66.67%	
563410	7.5	11.5	10	7.5	36.5	24	66.67%	
563450	11.5	9.5	11	4.5	36.5	24	66.67%	
556443	6	7.5	13	10	36.5	24	66.67%	
563271	8.5	8.5	12	6.5	35.5	28	77.78%	
562215	10	11	10	3.5	34.5	29	80.56%	
562222	7	11.5	11.5	4.5	34.5	29	80.56%	
562882	10.5	8.5	9	6.5	34.5	29	80.56%	
562194	11	13.5	8	0	32.5	32	88.89%	
563524	9	12	10	0	31	33	91.67%	
562145	6.5	7.5	9.5	7	30.5	34	94.44%	
563068	9	8	4	0	21	35	97.22%	
562178	3	1.5	3.5	1.5	9.5	36	100.00%	



저작권법 실전 GS
1회차 채점평

김선화 변리사
유화정 변리사

문제 1

뮤지컬-결합저작물의 이용 및 침해

설문 1

- 설문(1)은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를 구분하고 뮤지컬이 결합저작물임을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결합저작물의 경우 분리 이용가능한 각 부분별로 저작자가 다르므로, A,C,D 모두를 꼼꼼히 저작자로 검토하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실연자 B를 저작자로 구분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실연 연출가는 대본이나 안무와 같은 유형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니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설문 2

- 설문(2)는 이번 회차 전체에서 가장 어렵고 추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자신의 저작물이 아닌 C와 D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뮤지컬을 자유롭게 편집하여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고난이도의 조치형 문제였습니다.
- 답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조치를 정확히 적지 못하셨더라도 저작권의 제한 사유 등 자유롭게 이용방안을 제시하신 분들께 부분점수 부여해 드렸으나, “편집하여 이용”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편집저작물에 대해 검토하신 분들께는 거의 점수 드리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추상적이라 어렵게 느껴지실 때에는 출제 의도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 3

- 설문 (3)은 실연자 B,E,F의 지위와 그들의 권리를 검토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업체 甲의 행위로 인해 침해받은 실연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꼼꼼히 검토하는 문제였습니다.
- 논점이 많아 실수하기 쉽지만 논점 자체의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평

문제 1번이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출제되어 체감 난이도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문제부터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겁먹지 마시고 어떻게든 답안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추상적이고 어려운 조치 문제는 정답을 맞추는 사람보다 분량을 확보해서 기본점수라도 가져가는 분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에 붙잡혀 다른 문제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점수를 잃지 않도록 시간 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2

제호, 동일성 유지권, 대여권

설문 1

• 설문(1)에서는 제호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단하는 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판례와 결론을 잘 맞추셨으나, 사안포섭에서 단어를 어순에 따라 배열한 데에서 창작성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비유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안포섭을 해주시지는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설문 2

• 설문(2)에서는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썸네일 이미지로 올린 것이 그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사유(제13조 제2항 제5호)와 관련하여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설문 3

• 설문(3)에서는 도서의 표지 및 속지 일부가 대여권의 객체인지를 통해 대여권 침해인지를 판단하고, 乙의 행위가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그 판단방법을 사안에 자세히 녹여내는 연습을 시키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총 평

이번 문제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판례와 논점이 비교적 명확하여 법조문과 판례를 알면 빠르고 정확하게 써내려갈 수 있는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1번에서 당황해서 시간조절에 실패하였더라도 문제 2번에서 충분히 보완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포기는 금물입니다!!

문제 3

골프코스 문제

설문 1

- 설문(1)은 유명한 골프코스 판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골프코스의 설계도와 골프코스가 각각 어떤 저작물인지 판단하는 기본 논점 문제였습니다.
- 대부분 건축저작물 논점은 잘 캐치하셨으나, 도형저작물 논점을 누락하신 분이 많으니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설문 2

- 설문(2)는 기능적 저작물인 골프코스의 저작물성에 대해 그 창조적 개성이 충분히 나타나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사안에 포섭하여 설명하는 것이 출제 의도였습니다. 원 판례에서도 골프코스의 저작물성에 대해 사안포섭을 풍부히 하여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판례가 출제되면 사안포섭을 풍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사안포섭을 굉장히 간단히 하고 넘어가서 채점하면서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문 3

- 설문(3)은 저작물로 판단된 골프코스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인 그 설계도의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설계도의 저작자인 甲의 저작물임을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 따라서 乙에게 그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라는 판례를 함께 적어주신 분들께는 추가로 부분점수 부여해드렸습니다.

설문 4

- 설문(4)는 丙이 골프코스의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에 컴퓨터 그래픽적 요소를 추가하여 만든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영상을 만든 것에 대해 저작자인 甲의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음을 검토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총 평

문제 3번의 경우 소설문이 많아 시간 압박이 심했을 수 있으나, 유명한 판례가 크게 나와서 실제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크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판례가 출제될 경우 기능적저작물인 골프코스의 저작물성 인정과 관련한 사안포섭 부분을 잘 숙지하여 답안에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4

공표권과 저작자 사후 인격권
보호 규정

설문 1

• 설문(1)에서는 乙이 안내석을 세운 행위가 이 사건 시조의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간단한 기본 논점 문제가 출제되었고, 대부분의 분들께서 무리 없이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설문 2

• 설문(2)에서는 저작자 사후 인격권 보호 규정과 관련하여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의와 그에 대한 甲의 유족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乙이 실제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지까지 많은 논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설문(1)의 결과에 따라 乙이 공표를 한 것은 맞으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그 처벌까지는 받게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위반 우려가 있음을 근거로 甲의 유족들이 제128조에 따른 조치를 시도해 볼 수는 있다는 복잡한 결론을 정확히 내리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문 3

• 설문(3)에서는 화가 丙의 전시권은 丙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나, 그 행사와 관련하여 초상화를 위탁한 丁의 허락 없이 丙 자신의 전시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주셨어야 했는데, 꽤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음에도 대부분 정확히 풀어주셨던 문제입니다.

총 평

마지막 문제 4번에서는 단계별로 앞서 판단한 행위에 대한 결론이 다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연쇄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모든 스텝을 꼬임 없이 정확히 풀어주셔야 할 것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잘 써주셨던 것 같아 고생 많으셨다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주도 화이팅입니다!

[문제-1] 16.5

2. 선별(1)

1. 재발견

① 무리권이 전항리작용인지, ② 그럼이면 '한글'의 권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선별한다.

0.5

2 무리권이 전항리작용인지 - 적극

(1) 취지

무리권은 각종 음악, 노래, 춤 등이 전항되어 있으나, 이들은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우 없으므로, 전항리작용이 되고 복의 귀속한다.

1

(2) 사안

'한글'에는 공연 기획, 전항비용 안, 재즈 음악이 분리하여 이용 가능하므로 전항되어 있으므로, 전항리작용이다. 다시 각각의 소재의 권리권이 누구에게 귀속된다.

0.5

3. 각 소재의 권리권자가 누구인지

(1) 저작권 여부 - 적극적

저작권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 저작권 관련 개념을 취지

저작권자의 예외는 저작권의 창작적인 표현방식에 기하여 과잉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3) 사안

1) 공인 대표 - A

이 사안 대표에는 A가 등재인을 선정, 시인 제제, 미사 등
에 창작과 지성의 독자적 개성을 나타내었으므로, 이
사안 대표의 저작자는 A이다.

2) 전통무용 복원 - C

전통무용 복원은 전통무용 안무자인 C가 지성의 창작
적인 표현성을 담은 독자적인 안무를 창작하였으므로
이므로, 전통무용 복원은 저작자가 C이다.

3) 재즈 음악 복원 - D

재즈 음악복원은 재즈 음악가인 D가 지성의 창작적인
표현성을 담은 독자적인 음악 작품을 창작하였으므로
이므로, 저작자는 D이다.

(4) 결론 - A, C, D

따라서 '한울림'의 저작자는 A, C, D이며 각각 3/5씩

표시문(2)

1. 창작성

A가 '한울림'의 표시문을 이용하여 새로운 경우, 각 저작
자들과에게 창작성 있는 방법이 있는 지 3/5
를 기록한다.



2. 각 소제어-지각권리 권행권리의 리에

권행권리인 지각권리의 각 소제어 지각권은
권행권리인 지각권리인 영향이 없는 것
배후에 볼 때, 권행권리의 권리는 각 소제어 지각
권리들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3. 방법 ① - 지각권리 양도

(1) 리에 - 조항 45 ①, ②

지각권리는 권의 또는 인의 양도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각권리인 양도되지 않는 것은 인정한다.

(2) 사안

A가 '한정권은 권행권에 이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각 소제어 지각
권리인 C, B에게 각 부분 지각권리인 양도받은
수 있다. 다만 특약이 없으면 지각권리는 포
괄적 권리 양도로서, 권리 시 서로 양각성이 부
각되지 않도록 권리가 필요하다.

4. 방법 ② - 지각권 이용허락

(1) 리에 - 조항 46 ①, ②

지각권리인 지각권은 다른 사람에게 지각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때 허락 받은 자는 허락



같은 이용 방법 및 권리 범위 안에서 2 권리를
을 이용할 수 있다.

(2) 사안

A는 CD에 각 소대 별의 권리를 이용하도록 구
할 수 있고, 허락 권에 관한 이용 방식에 대한
권은 추가하여 이용하도록 받은 후, 허락은 내
법 제정 가능함.

5. 방법 ③ - 저작재산권 존속기간 만료

(1) 예시 - 조항 39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2) 사안

A는 CD의 저작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에 이에 대해 저작자의 허락 이용이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된다.

0.5

II. 선출 (3)

1. 재귀권

B, E, F가 저작재산권을 이관하는 지위에 있는 지
권리는 ~ 목적이 있는 지 산정된다.

0.5

2. B, E, F의 지위 및 권리



(1) 지위 - 신연과

1) 의미 - 조 24.

지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 밖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신연은 지위, 예를 들면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안

- ① "B"의 경우, "한원"의 모든 신연을 상속하는 자 이므로, 신연권이다.
- ② "E"의 경우, 상속권자, C가 상속받은 양자로 목적으로 함으로써 신연권이다.
- ③ "D"의 경우, 상속권자, D가 상속받은 자로 목적이 아니라, 상속받은 방법으로 취득하므로 신연권이다.

0.5

(2) 권리

생명권(조 66), 인간성유지권(조 67), 복제권(조 69), 배양권(조 70), 특허권(조 71), 공표권(조 72), 배양권(조 73), 영유권(조 74), 보양권(조 75, 76, 76) 등이 있다.

3. 권리 침해한 권리

(1) 권리 행위 금지

1) B, E, F 생명 권리 침해 행위.

B, E, F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은 행위는 생명권 침해가 아닌 다른 권리 침해이다.

2) E 생명 권리 침해



근거 인용한 재판 일부를 삭제한 경우는, 그 재판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이다.

05

3) F 재판 3배속

근거 논리 밖으로 재판을 3배속으로 만든 것 역시, 동일성
을 해하는 행위이다.

4) 재판의 유류분 채권의 압류 - 인용 (기210.)

특히 관련된 영향을 재판의 유류분 채권에 압류한
것은 인용 행위이다.

5) 영상 편집 - 복제 (기22.)

영상을 편집하면서 원본의 인상을 같은 영상의
근거로 복제이다.

(2) 침해한 권리

1) 생명권 - 기66

무엇든 생명권 침해 생명권 침해

2) 동등성 권리 - 기67

무엇든 재판 재판의 동일성을 해하여 동등성 권리 침해

3) 복제권 - 기69

영상 편집으로 복제권 침해

4) 인용권 - 기74

유류분 압류로 인용권 침해

-끝-



I 실문(1)

1. 저작물의 의미 - 제 2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0.5

2. 제호의 저작물성 인정여부

(1) 의미

저작물의 내용이 참혹적으로 담겨있으며, 특별 표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0.5

(2) 짧은 제호의 저작물성 인정여부. (判例)

제호는 저작물의 표어에 불과하므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지 어렵다. 따라서 제호의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개의 단어만 이루어진 제호에 창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할 바 있다.

(3) 사안

甲의 사전 제호는 '사랑은 강아지 모양'으로 이는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유적 표현의 사용 되긴 했지만, 매우 짧은 제호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어렵다.

5. 결론.

본 사안의 사전 제호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2. 실권(2)

1. 동일성 유지권 의의 및 취지 - 제 13조 1항.

저작물의 변경을 수정 방지하기 위해. 저작자는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할 권리 가진다.

2.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

(1) 침해 요건 (判例).

저작자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형식 또는 제도에 실질적 개변이 가해져 동일성이 손상되어야 하고, 이러한 개변에도 저작물을 표현 형식을 본질적 특징이 직접적으로 감득되어야 한다.

(2)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제한 (判例).

피고가 원고 허락 없이 사진 축소하여 이치리를 변환했으나, 단순한 축소에 불과하여 본질적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사안의 경우.

乙은 甲의 도서 중 일부 페이지만을 여지화하여 축소하였으며, 해상도 등이 낮아 겹다오는 하나 이로써 본질적 내용에 변경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乙의 행위는 甲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아니다.

II 실문(3).

1. 논점정리. - 대여권-제외로.

대여권은 상업용음반 및 상업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을 병리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의미하는바, 피도서
속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대여하는 행위가 대여권 침해
구성하는지 검토하고, 때 공정한 이용 여부 논란다.

2. 대여권 침해여부. (소극).

(1) 대여의 객체 (뒤(예)

대여권 신정의 대상은 상업용 음반 또는 프로그램에
한정되고, 도서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도서의 대여
행위는 대여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사안의 경위.

은 甲의 도서를 온라인으로 대여한 바, 이는 상업용
음반 내지 프로그램에 해당 하지 않음으로 대여권
침해로 볼 수 없다.

3. 저작물의 공정이용 여부.

(1) 위의 열 취지 - 제 35조의 5.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용성 드모 위해 특정한 조건
하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가능하다.

(2) 공정한 이용여부의 판단 요소.

1) 이용 목적 및 성격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갖는지



능의 여부, 원저작물의 변형 정도, 공익성 및 비영리성
고려할 수 있다.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원저작물이 사실적, 정보적 성격의 저작물인지, 공표된
저작물인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3) 사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양적 비중 및 질적 중요성,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인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4) 시장 가치 및 예비적 영향

저작물의 시장 가치 훼손 여부 등 고려할 수 있다.

(3) 사안의 경위

은 甲의 저작물인 乙의 총 20 페이지 중 단
2 페이지 만을 샘플로 사용 했으며, 그러므로
이외의 축소 과정에서 해상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
하면 그 양적 비중 내지 질적 중요성이 낮음이 인정
되며, 이러한 사용을 신재 甲 저작물의 시장 가치
에도 영향 미치지 못하는 등이 인정되는 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4 결론

은의 행위는 甲 저작물의 대역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것이다.

[비중]을 고려하면 속지 부분은 120장 중 2장
으로 매우 적은 비중이다

[시장가치에 영향] 작문 부분 양호로운 도시의 시장
가치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논거] 따라서 그의 양호로운 행위는 12035915
공정성 이동이 인정한다.

<문제-3> 15.5

I 심문(1)

1. 권록저작물 의의 (법 40(5))

권록물. 권록은 위한 문헌 및 성격 등이 2 쪽의
권록 저작물도 저작물에 인정한다.

2. 권록저작물 인정 요건 11933

권록저작물에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표현
복잡하거나, 거구 복잡이 아니어도 융합적인
표현이 인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심제도의 경우

① 심제도는 랭계 있는 권록물이 창작성이 인정되면
권록저작물의 인정으로 인정된다

② 랭계없는 권록물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형 저작물에 불리하다.



4. 실물의 처분

(1) 공표 권의 경우 - 권록저작물

공표 권은 즉거 복권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어려 시간의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인 권록
저작물에 해당한다.

(2) 실거도의 경우 - 권록저작물

특수한 바와 같이 실거도이 아닌 공표 권은 공표의
광작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실거도는 Art 4(5)의
권록저작물에 해당한다.

0.5

II 실물(2)

1. 광작성 판본 (방법 제1항)

광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저작자 나름대로의 창조적 개성이
인정되어야 창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0.5

2. 누가 인터넷을 같거나 비슷한 경우 제1항

간단한 것이어서 누가 인터넷을 같거나 비슷한
수밖에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광작성이 인정
될 수 있다.

1

3.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제1항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기능적 목의
달성에 광작성이 제한을 받은 경우가 많다.

1



이 때 동일한 기능을 갖는 클라우드라는 시장 범위의
광작성은 인정할 수는 없고, 별도의 광작성이
포유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4. 광작성 판단 (위/아)

기능적 저작물 · 기록저작물의 광작성은 그것을 영작 영작
하여 판단해야 한다.

5. 사람의 저작

① 이 사건 클트 로스는 기록저작물이다.

② 이 사건 ~~클트 로스~~ 클트 로스는 A 클트 로스 특정
지점에 특정 저작 행위 실제되어 표현이
지역이 있다.

③ 그러에도 무엇 각 특정 표현의 본질
적· 핵심 방향· 각도, 병치 위치· 표현
위치· 표현· 개성을 관리한다

④ 개별 특의 배치 순서를 특적으로 관리한다.

⑤ 나이가 이동 개들이 각 특에서 비례 대응
관점을 시위 표현이 할 수 있도록 표현

⑥ 구번 지항 씩 중판 대 어우 러지 표현
구성 요소를 어로 적으로 배치 하였다.

⑦ 무엇 지항 이러 한 표현 행위 이러
방향 으로 개인의 창조 적 개성을 표현
하였다.

⑧ 따라서 이 사건 골프코스는 19의 창작성이 인정됨으로 저작물로 인정된다.

0.5

6. 결론

이 사건 골프코스는 저작물로 인정된다.

II. 심문(3)

1. 창작과 원칙 (요청 2(2))

창작성 본질의 창작에 이바지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

2. 설계자와 시공자 중 저작자가 되는 자 (부13)

설계자와 시공자 중 설계자가 2 설계도면 건축물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시공자에게는 2 저작물의 이용권이 유보되어 있을 뿐이다.

1.5

3. 사안의 경우

① 이 사건 골프코스의 설계자는 건축가 박기근 2은 19의 설계도에 따라 시공·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② 설계자가 저작라이브는 이 사건 골프코스의 저작자는 건축가 19이다.

4. 결론

골프코스의 저작자는 건축가 19이다.

1.5



ㄱ 실문(4)

1. 兩 權者 著作財産은 ㉠ - 복제권

(1) 복제권 의의 (1516)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권 권리를 독점한다.

(2) 복제권에서 예외인 경우 (1517)

복제 과정에서 일부 예외가 있었든 경우라고

언제라도 된 저작물을 직간접적으로 복제하면

어쨌든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3) 사면의 경우

① 兩 權者 著作재산 中의 利害를 받지 않은 때 이 사면 공표권을 관행하는 방법으로 복제 하였다.

② 관행한 것은 152(22)에 의해 복제 행위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兩은 中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2. 兩 權者 著作財産은 ㉡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1)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의의 (1522)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 하여 이동한 권리를 가진다.

(2) 2차적 저작물 해당 물건 (1523)

① 등 저작물을 기원한 저작물은 ② 등 저작물과

신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③ 2차적 저작물

이러한 것은 수 많은 장치는 서로를 광각 렌즈로
이어 된다.

1) 사안의 개요

① 회사는 A의 콘텐츠를 A를 기록 하여

② 컴퓨터 그래픽 데이터를 추가하여 변경된 저작물을

이러한 것은 수 많은 장치는 서로를 광각 렌즈로
추가하였도

③ 이 사전 콘텐츠가 거의 그대로 남긴

3D 스크린 콘텐츠 영상은 제작하여 및 저작물인

콘텐츠인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생성
하였다.

④ 따라서 회사는 A의 그래픽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3. 권리

회사는 A의 복제권, 그래픽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

4. 권리 권리 침해 여부

① 동일하게 공개 되어 공인-공중 수신권 침해
유무

② 유통물의 양과 비, 전시권 침해도 있다.

<문제-4> //

I. 선문(1)

1. 공표 외의 (제2(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인·공중상인 그 밖의 상하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표의 외배제(제30)

공표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

3. 선문의 이해

- ① 공은 언제나 시로써 사적 불특정 다수인
에게서, 즉 공표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공의 성위는
② 공표에 해당한다.

II. 선문(2)

1. ~~제14(2)~~ 제14(1), (2) (사후 인정된 보호 규정)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신이 존속한다. (제14(1))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은 이동하는 것은
생존하였더라면 저작권의 행사가 될 경우를
대처는 아니된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IP 유권자들의 강제 이행 조치

(1) 제128

주작가의 사본 등 유권자들은 제14② 위반 유권자가 없거나 위반자 개에게 유효한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방어 퇴보 청구도 할 수 있다.

(2) 시연의 경우

① IP의 유권은 제128에 따라 제123의 유효한 정지 청구에 제127의 방어 퇴보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그러나 2의 공판은 4의 역사적 방법을 더욱 높여 제14② 단서에 의해 제14② 위반이 아니다.

③ 따라서 4의 유권들은 강제 이행 조치를 할 수 없다.

3. 2의 행정처분 가능성

(1) 제137 ① (3)

제14② 등 위반자 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시연의 경우

① 2의 행정처분 4의 역사적 방법이 높여 제14② 단서에 의해 제14② ~~항목에 의해~~

0.5

위반이 아닌 바, 같은 정사상 제반을 논거
않는다.

Ⅱ. 사문(3)

~~1. 권리행사의~~

1. 권리의 주장의 정당성

(1) 권리행사의 제각권 (제33조)

권리행사의 위약이 유한 사건의 경우 제각권은
권리행사는 그런 지나 권리행사가 지어지 있다.

0.5

(2) 이동 거부 (제35조 ④)

위약이 유한 권리행사의 또는 사건의 경우 위약과
동일이 아닌 때에는 이를 이동할 수 있다.

(3) 사면의 경우

1) 제각권자로서 권리의 정당성 - 판정

위약이 유한 권리행사의 효력은 지어지
있더라도 제각권은 그것을 그런 지어지 있을
것이 자신이 제각권자로서 하는 부담 인정한다.

2) 권리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권리의 정당성 - 판정

① 제35조 ④에 유한 위약자인 것이 이동이
대체 이익을 취하는 경우 권 이동할 수
없다.

② 것이 실제로 이익을 취하는 바, 권 이

0.5



권리를 이동할 수 있다.

③ 甲의 자신의 행위 방법 주장은 부당하다.

2. 甲의 저작권 변상 책임

(1) 조 138 (1)

조 35 (4) 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면의 경우

甲은 조 35 (4) 를 위반한 자이므로 조 138 (1) 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